

국방부령

지 퇴 의 제 거 등 지 퇴 대 응 활 동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방부 (시설기획과)
연 월 일	2024.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정이유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6. 2. 21. 시행)됨에 따라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승인의 절차·방법, 사전 조치 절차·방법, 완료보고 및 검증의 세부절차와 방법,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행계획의 수립·착수승인 등(안 제4조)

지뢰제거자의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착수승인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사전 조치 절차·방법(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1)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뢰제거자는 위험수준평가를 작성하도록 함.
- 2)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위험예방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의 관할부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은 위험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함.
- 3)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접근 차단

시설 중 경계표지의 설치 방법에 대하여 규정

- 4)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응급의료 조치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함.
- 5)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임시보관시설의 설치 요건 및 구비 사항을 규정함.
- 6)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화재 및 환경오염방지 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지뢰제거자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완료보고 및 검증의 세부절차와 방법(안 제12조)

지뢰제거자의 완료 보고 내용 및 절차, 국방부장관의 완료보고 후 검증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라. 실태조사의 범위·방법(안 제15조)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지뢰등의 매설 및 관리현황, 제거가 필요한 지역 현황, 사건·사고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0000.00.00 ~ 0000.00.0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뢰제거자 교육훈련의 대행)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뢰등의 탐지·제거 교육을 대행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뢰대응활동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부대
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지뢰등 탐지·제거 교육훈련을 대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시설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교육인원의 수를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며,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 전날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제2항 내지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그 지정의 연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년이며 지정연장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 전날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다.

제3조(지정취소)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 교육훈련의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조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뢰제거자 교육훈련의 대행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착수 승인 등) ① 「지뢰의 제거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제거를 실시하는 자(지뢰 등의 탐지·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를 위임받거나 대행

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지뢰제거자”라 한다)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4.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5. 현장 관리 조직도
6. 현장 시설 배치도
7. 일정관리계획
8. 현장 표준운영절차
9. 최근 1년간의 장비·물자의 점검 사항 및 점검 주기를 적은 서류(구입 또는 대여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장비·물자의 경우에는 구입 또는 대여한 기간 동안의 점검 사항 및 점검 주기를 적은 서류를 의미한다)
10. 품질관리계획
11. 지뢰정보관리계획
12. 안전보건관리계획
13. 환경관리계획
14. 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
15. 제거대행계약서 사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뢰제거자 중 국방부장관 외의 지뢰제거자로서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 착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국방부장관 외의 지뢰제거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업무 착수 승인을 하거나 업무 착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승인서 또는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의 종류와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따른다.

제5조(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접근 가능성
2. 차량 진출입로 상태
3. 상황실, 일일 안전교육 장소, 의료·위생·휴게시설 등의 설치 상태
4. 악기상에 의한 재해 발생 가능성
5. 기타 예상되는 작업현장의 위험요소

② 지뢰제거자는 제1항에 따라 위험수준을 평가한 후 위험수준평가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수준 평가 시기 등 세부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따른다.

제6조(위험예방교육)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거의 목적 및 기간
2. 제거 지역의 위험대상 물체로서 지뢰와 불발탄 종류 및 형상
3. 지뢰와 불발탄 제거의 범위
4. 탐지 및 제거 절차
5. 안전관리대책
6. 위험대상 물체의 주민발견 시, 피해발생 시 신고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예방교육은 지뢰제거자가 주관하여 주민설명회 또는 홍보활동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의 관할부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은 위험예방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예방교육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따른다.

제7조(접근 차단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뢰제거자는 지뢰등 탐지·제거 작업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한다)에서 안전지역 및 위험지역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모양·색상·재질 등으로 구분되어 누구나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표지 등 접근차단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따른다.

제8조(응급의료 조치)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뢰제거자는 유사시 응급의료를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현장에 응급처치소 설치 및 응급처치 요원 배치
2. 작업현장에 응급처치를 위한 물자·장비의 구비
3. 작업현장에 구급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
4. 구급차의 대여(구급차를 직접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작업현장에 배치
5. 응급의료지원체계 수립 및 작업현장에 비치
6. 그 밖에 유사시 응급의료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급의료 조치 등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따른다.

제9조(임시보관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벽과 바닥은 모래주머니, 콘크리트블럭조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파편으로부터 보호되고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2. 지붕은 금속재(강판, 형강 등으로 마감한 샌드위치 패널 등) 그 밖의 우천 등의 기상과 도난에 대비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할 것

② 지뢰제거자는 상황실, 휴식공간 등과의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임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뢰제거자는 임시보관시설에 이중 잠금장치, 울타리(철조망) 및 CCTV를 설치하여 보관한 지뢰등의 피탈, 도난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지뢰제거자는 임시보관시설에 지뢰등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책임자를 정하여 지뢰등의 종류, 수불 및 잔류수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보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따른다.

제10조(화재 및 환경오염방지 조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뢰제거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지뢰등의 탐지·제거 전 화재예방계획 및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견된 지뢰등의 임시보관시설과 가연성 물질 보관시설의 분리
2. 임시보관시설 주변 20m 이내 금연 및 화기 금지 표시
3. 그 밖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

② 지뢰제거자는 임시보관시설, 가연성 물질의 보관시설 등에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뢰제거자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뢰등의 탐지·제거 전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뢰제거자는 먼지나 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설비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및 환경오염방지 조치

등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따른다.

제11조(지뢰등의 탐지·제거 수행 방법) ① 지뢰등의 탐지·제거 수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인력에 의한 제거: 지뢰 제거 인원이 지뢰등 탐지기를 이용하여 탐지 후 소형 삽 등을 이용하여 굴토(땅파기)·제거하는 방법
2. 장비에 의한 제거: 지뢰 제거 인원이 지뢰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지뢰제거장비를 이용하여 탐지·굴토·제거하는 방법
3. 그 밖에 지뢰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의 지뢰등의 탐지·제거 수행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따른다.

제12조(완료 보고 및 검증의 세부절차와 방법) ① 지뢰제거자가 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완료 보고 시 제출하는 지뢰대응활동 관련 자료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뢰제거자 세부 정보
2. 제거지역 정보(일련번호, 좌표, 참조점, 전환점 및 발견된 지뢰등의 목록 등)
3. 지뢰제거자에게 요구한 제거 목표(탐지 깊이 등)
4. 작업일지 및 보고서
5. 제4조제1항에 따른 일정관리계획·품질관리계획·지뢰정보관리계

획 · 안전보건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 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의 종류와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따른다.

③ 지뢰제거자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뢰제거자에게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뢰제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완된 자료를 제출한 후 다시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 제4항에 따라 완료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최종적으로 보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증을 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증 시작 후 30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증팀은 현장을 방문하여 검증할 것

2. 국방부장관은 방문 최소 1일 전 지뢰제거자에게 현장방문 일자를 통보할 것

3. 제거완료된 토지의 검증은 전면적을 2,500평방미터의 단위(이하 ‘로

트'라 한다)로 구분하고 최소한 각 로트별로 10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무작위로 검사할 것

4. 검증팀은 지뢰제거자에게 요구한 탐지 깊이까지 확인하여 지뢰등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할 것

5. 검증 시 사용하는 장비는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에 사용한 장비와 동일한 성능의 장비이어야 할 것

6. 검증과정에서 지뢰등이 발견되는 등 중대한 부적합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 전면적을 다시 탐지·제거한 후 재검증을 실시할 것(이 경우 각 로트별 검증면적을 늘릴 수 있다)

7.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에게 검증결과를 문서로 통보할 것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과정에서 중대한 부적합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국방부장관은 검증을 중지하고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의 세부절차와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정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따른다.

제13조(지뢰등의 발견 시 관공서 신고 절차와 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뢰등을 발견한 자는 전화, 문자, 이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뢰등의 발견자로부터 지뢰등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부대의 장은 지뢰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부대에 해당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신고내용을 확인한 부대의 장은 해당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신속하게 출동시켜 현장을 확인하고 지뢰등 주변에 경고 테이프 또는 임시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뢰대응활동표준) 법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뢰등의 탐지·제거 관련 교육 방법·절차
2. 지뢰등의 탐지·제거 과정에서의 사전 조치 방법·절차
3. 지뢰등의 탐지·제거 수행 방법·절차
4. 검증 방법 및 기준, 토지해제 절차
5. 실태조사 수행 방법·절차
6.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관리·운영
7.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뢰등의 매설 및 관리 현황
2. 지뢰등의 제거가 필요한 지역 현황
3. 지뢰등으로 인한 사건·사고 현황
4. 그 밖의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대장(전산자료로 대신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말한다) 및 국방부장관이 소관 국유재산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수행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따른다.

제16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합동참모의장
3. 각 군 참모총장
4.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지뢰정보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뢰등의 매설 및 관리 현황
2. 지뢰등의 제거 현황
3. 지뢰등으로 인한 사건·사고 현황
4. 그 밖에 지뢰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확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따른다.

제17조 (지뢰제거자의 증표)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제12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뢰제거자의 교육훈련 대행자 지정조건(제2조 관련)

구분	내용
1. 장비	금속지뢰탐지기, 비금속탐지기, 개인보호장구, 불발탄 샘플 등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보재
2. 시설	가.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나.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구비한 강의실 다. 500제곱미터 이상의 훈련장
3. 인력	국내외 지뢰제거 관련 교육 수료 후 2년 이상 지뢰제거 실무경력(현장 지뢰제거 경력 1년 이상 포함)을 갖춘 강사 2명 이상
4. 교육계획	과정별 학습 및 실습계획, 평가계획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

비고

1. 장비·시설 및 교육계획의 적격여부 확인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인력기준에서 국내외 지뢰제거 관련 교육의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에 따른다.
3. 지뢰제거 관련 실무경력은 현장 지뢰제거 경력과 기타 지뢰대응활동 관련 업무 경력을 의미한다.
4. 지뢰제거 관련 실무경력 기간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뢰제거자의 교육훈련 대행자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구분	☐ 신규 ☐ 연장		
신청기관	법인명(사업자명,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전화번호	
	주소		
교육인력	국내 지뢰제거 관련 교육 수료 강사	명	
	국외 지뢰제거 관련 교육 수료 강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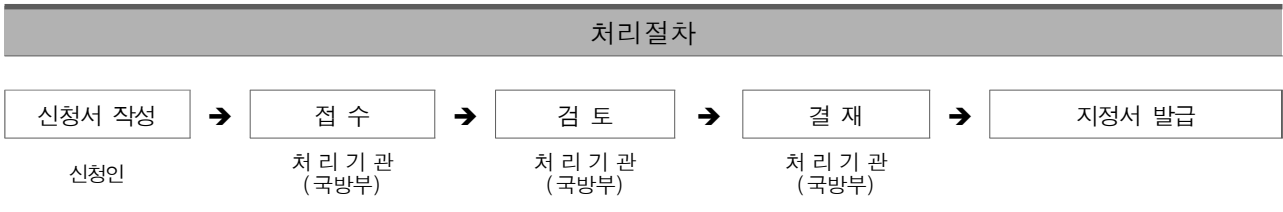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또는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뢰제거자 교육훈련의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시설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지뢰제거자의 교육훈련 대행자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교육기관 지정서

-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 지정조건:
- 유효기간: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또는 제2조제5항 따라 위 법인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방부장관

직인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및 인가·허가 등의 확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신청인 (지뢰제거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예정지 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시기 및 기간	
사업비용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뢰제거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뒤쪽 참조
-------------	--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실행계획서

1. 현장 관리 조직도(별첨)
2. 현장 시설 배치도(별첨)
3. 일정관리계획(별첨)
4. 현장 표준운영절차(별첨)
5. 최근 1년간의 장비·물자의 점검 사항 및 점검 주기를 적은 서류(별첨)
6. 품질관리계획(별첨)
7. 지뢰정보관리계획(별첨)
8. 안전보건관리계획(별첨)
9. 환경관리계획(별첨)
10. 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별첨)
11. 제거대행계약서 사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및 인가·허가 또는 협의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지뢰제거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개 요	변경 사유 ※ 필요시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변경내용 ※ 당초 실행계획과 비교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관계 서류를 첨부합니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뢰제거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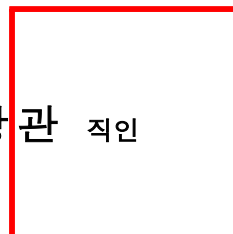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서

승인번호		
신 청 인 (지뢰제거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명칭		
위 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승인조건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획을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방부장관 직인



지뢰제거자 증표

(앞쪽)

지뢰대응활동 담당자증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 으로 뒤 그림 없이 6 개월 이내 촬영한 것)
(발 급 번 호)
(성 명)
국 방 부

50mm×90mm[백상지 150g/㎡]

(뒤쪽)

소 속:
성 명:
직 위:
군 번:
(생년월일)
유효기간:
위 사람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 률」 제2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뢰등 탐지·제거 업무수 행을 위해 임명·위촉된 사 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직인

50mm×90mm[백상지 15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시설기획과	
연 락 처	(02) 748 - 5898